

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04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2. 4. 1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- 사업대상지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대중교통 및 투어버스를 통한 도동서원 접근성 향상으로 관내 다른 관광지와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동서원 관광객의 행복택시 이용자격을 제외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자연부락에 한정 (안 제2조)
- 나. 도동서원 관광객 이용자격 제외 (안 제4조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 - (1) 지방자치법 제9조
 - (2)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기타
 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 - (2) 입법예고(2022. 3. 8. ~ 3. 28.) 결과 : 해당사항 없음
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농촌지역”을 “자연부락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제2호에 따른 사람이 이용하는 행복택시의 운행구간은 해당 직장, 학교 등과 인접버스정류장 사이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 및 도동서원 소재지를”을 “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대중교통 취약지역”이란 시내버스 미운행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<u>농촌지역</u>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마을을 말한다. 2. ~ 6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-----<u>자</u> <u>연부락</u>----- -----. 2. ~ 6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이용자격)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서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. 1. ~ 2. (생략) 3. <u>도동서원 관광객</u>	제4조(이용자격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삭제>
제5조(운행방법) ① (생략) ② 제4조제2호에 따른 사람이 이용하는 행복택시의 운행구간은 <u>해당 직장, 학교 등과 인접버스정류장 사이</u>로 하고, 제4조제3호에 따른 관광객이 이용하는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<u>도동서원과 구지면 행정복지센터 사이</u>로 한다. ③ ~ ⑥ (생략)	제5조(운행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해당 직장, 학교 등과 인접버스정류장 사이</u>로 한다. 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제6조(행복택시 이용권의 발급)	제6조(행복택시 이용권의 발급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 및 도동서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·면장은 매월 10일까지 다음 달 해당 지역에 필요한 행복택시 이용권의 발급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제출하고, 군수는 이용자수, 이용거리 및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적정한 배수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20일까지 관할 읍·면장에게 교부하며 읍·면장은 이를 25일까지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한다. 다만, 제4조제2호에 따른 사람에게는 관할 읍·면장이 직접 지급한다.	② -----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□ 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<이하생략>

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
제3조(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)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선(路線) 여객자동차운송사업: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(이하 “노선“이라 한다)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
2. 구역(區域) 여객자동차운송사업: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
3.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: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, 운행계통·운행시간·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